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

제출년월일 : 2026. 8. 26.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되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종이수입증지의 사용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규격 및 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증기·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되는 '전자수입증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전자수입증지의 납부 방법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조)

다. 전자수입증지 사용 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과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인증기등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소속 공무원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납부 수단별 시 금고 입금 기한을 정함.(안 제7조)

바. 종이수입증지의 효력 상실 및 폐기, 종이수입증지 소유자에 대한 환매 절차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

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등: 붙임 1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1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

5)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제6조

6)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7. 15.~8. 5.)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현행 조례: 붙임 2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수입증지의 관리와 수입증지의 발행에 따른 수입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計器)(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나 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스템이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인영(印影) 또는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의 납부 방법)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이하 “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또는 발급기 번호를 말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등)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에 들어가는 색상, 그림 또는 문구 등 도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등) ① 인증기, 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이하 “인증기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무를 총괄하며, 인증기등의 관리와 제7조에 따른 수입금 결산 등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기를 설치(교체를 포함한다)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인증기 고유번호
3. 인증기의 사용 개시일 또는 폐기일
4. 인증기 관리책임자(인증기 사용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7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결산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리담당자는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일 결산해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행된 전자수입증지의 결산 방법 및 주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 시 인증기나 발급기의 고장 또는 취급 부주의 등으

로 전자수입증지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별표의 소인(消印)으로 날인하고, 그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다만, 입금 기한이 토요일이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1. 현금: 납부받은 날의 다음 날
2. 전자지급수단: 결제 대행업체로부터 수입금이 정산되어 입금된 날의 다음 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소유한 자가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원래의 판매가격으로 환매해야 한다. 다만, 환매금 중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시장은 즉시 이를 폐기해야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종이수입증지의 판매계약은 이 조례 시행일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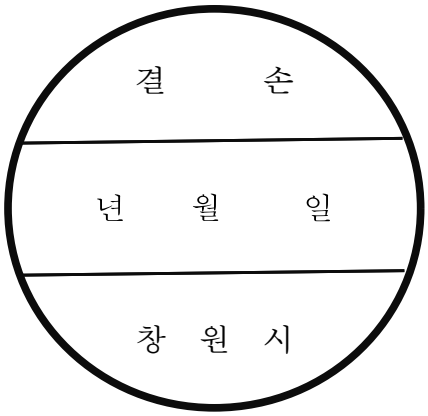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결손 소인 규격(제7조제2항 관련)



(지름 2.5센티미터 이내)

■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별지 서식]

전자수입증지 일일 결산대장

결재			

기안일자		월 일		구분	

금일발행		금일결손		금일카드결제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금일실제입금액		결손누계		금일까지실제입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비고	

붙임 1 관계 법령 등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접수 도장을 찍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2. ~ 22 (생 략)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중 발췌

보존기간	대상기록물
5년	1. (생 략) 2.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 (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 ~ 5. (생 략)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창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창원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렇지 않다.

■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붙임 2 현행 조례

■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창원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창원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주민시스템"이라 한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납부한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창원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 한 차례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7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의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고,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8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7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시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시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9조(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등) ① 증지는 시장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최근 1년간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계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를 원할 경우에 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증지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시보에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1에 따른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판매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판매인의 명의, 위치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판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발생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등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려면 출납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책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드는 실제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6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사용 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대금의 납입은 계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납부인 경우에는 카드사 정산(입금)일 다음 날까지로 한다.

② 계기와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와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증지판매 및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 무인발급기와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수수료정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산하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수입금 관리) ①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간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상조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증지의 소인) ①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첨부한 면과 증지 문체에 걸쳐 선명하게 소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인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20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1조(증지의 환매) ① 증지는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판매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13조제3항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22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별지 제5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시 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3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① 금고에서는 증지불출상황이 발생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출납부를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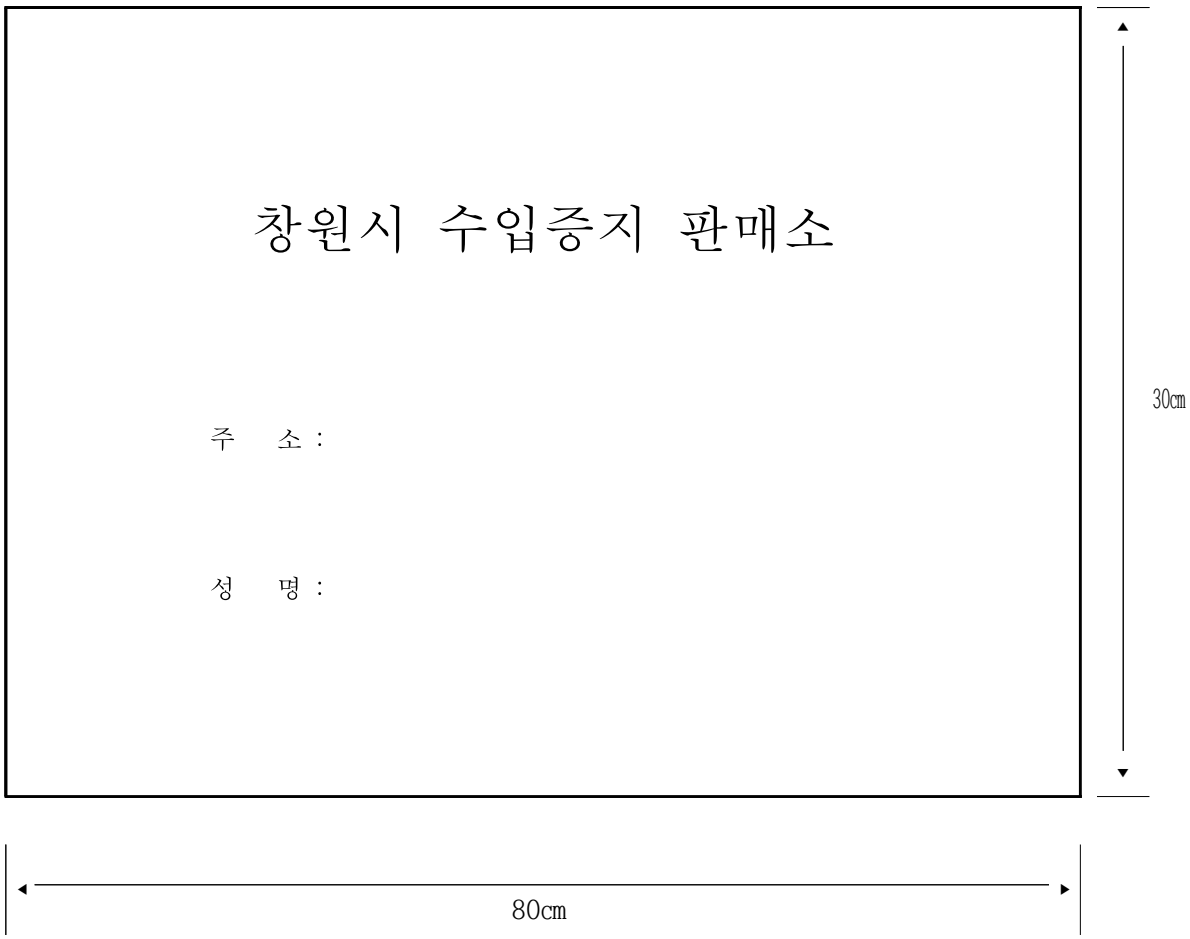
② 출납원은 매일 수입증지출납부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생략>

[별표 1]

판매지정 표찰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소 인 인 규 격(제19조제2항)

(지름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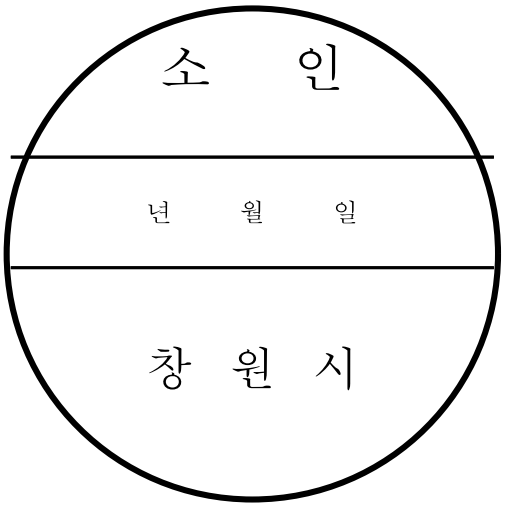
(시)



(읍·면·동)



(사 업 소)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판매계약 신청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창원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9조에 따라 계약을 신청합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예정 위치
(에서 M)

2. 직 업 :

3. 첨부서류 : 위치도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호서식]

수 입 증 지 판 매 대 장

구분 / 권종 / 년월일	미입												관미								
	계	원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5,000	원 10,000	계	원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구분 / 권종 / 년월일	판미							잔고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5,000	원 10,000	계	원 10	원 40	원 50	원 60	원 100	원 200	원 300	원 400	원 500	원 700	원 1,000	원 5,000	원 10,000

297mm×210mm(중성지 75g/㎡)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 판매계약(변경,해지) 신청서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계약변경 사유 :

변 경 내 역		
명 의 판매소	당초	
	변경	
※ 첨부서류 : 위치도		

□ 계약해지 사유 :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 원 시 장 귀하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4호서식]

수입증지 매수(출납, 보관·교환, 환매) 청구서

구분 / 권종	재 고 량		청구(교환, 환매)량		공 제 액 (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 고 (사유)
	매수	금액	매수	금 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 환매) 청구합니다.

. . .

청 구 인 (인)

창 원 시 장 귀하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5호서식]

수입증지
불출(교환,환매)증

No.

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원부

판매인	주소	
	성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계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발 행 년 월 일		
.		

No.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소	
	성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계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환매)함.

. . .

창원시 수입금 출납원 (인)

귀하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6호서식]

수 입 증 지 수 불 부

연월일	구 분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입 고														
	출 고														
	판 매														
	결 손														
	잔 고														

297㎜×210㎜(중성지 75g/㎡)

【별지 제7호서식】

수 입 증 지 요 금 계 기 관 리 대 장

월일	금일발행		금일결손		금일카드발행		누 계		결손누계		금일까지 실제입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